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는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 지급액 (천 원)
애 국 지 사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7,18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3,827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3,026
	4. 건국포장 서훈자	2,168
	5. 대통령표창자	1,425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3,185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757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346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297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910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866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342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331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가. 배우자	907
	나. 배우자 외의 유족	889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 정지금액 (천원)
애 국 지 사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1,612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1,612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1,414
	4. 건국포장 서훈자	1,077
	5. 대통령표창자	608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573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145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734
	나. 배우자 외의 유족	685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98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54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51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40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가. 배우자	299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81

[별표 2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이 2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2. 가족이 3명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7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3만6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30만원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